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4조의 요약

- 각 사업연도 소득 : $\text{익금총액} > \text{손금총액}$ 인 경우로 $\text{익금총액} - \text{손금총액}$ 으로 계산함.
- 각 사업연도 결손금 : $\text{손금총액} > \text{익금총액}$ 인 경우로 $\text{손금총액} - \text{익금총액}$ 으로 계산함.
-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가가능함.

●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I. 각 사업연도 소득과 결손금

1. 본 조의 개요

- ① $\text{소득} = \text{익금} - \text{손금}$, $\text{결손금} = \text{손금} - \text{익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또한 그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금액은 결손금으로서 이러한 결손금은 차기로 이월되어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될 수 있다. 즉, 소득은 익금의 손금초과액이고, 손실은 손금의 익금초과액이다.

개인의 과세소득은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소득원천설에 의하나,

법인의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정의되는 익금과 손금으로부터 산출된다. 여기서 익금과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익금이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가 손금이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는 수익 또는 손비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에 의거 법인세법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의 금액이라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하여 판단한다. 수익과 손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법 제15조와 제19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②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법인소득계산

법인세는 소득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따라 차별적 세율을 적용하거나 따로따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과는 관계없이 과세기간별로 순자산이 증가된 익금에서 순자산이 감소된 손금을 공제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므로 익금이 더 많으면 사업연도 소득이 되고, 익금보다 손금이 더 많으면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결손금이 되어 차기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된다.

과세소득을 상기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을 순자산증가설이라 하는데 소득세법상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과는 차이가 있다. 즉,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법인의 정상적 소득뿐만 아니라 일시적 혹은 우발적·불법적 소득도 포함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2. 기업회계상 소득의 의미

① 기업회계기준서상 당기순이익과 이익의 뜻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는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업의 경영성과 혹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업회계상의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상 당기순이익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손익계산서상 소득 혹은 이익은 계산 단계별로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 및 당기순손익 등으로 구분 표시된다.

②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의 이익이란 일정기간 동안에 실현된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역사적 발생원가와의 차액으로 정의되는데, 발생원천·계산방법 및 이익창출 주체의 속성 등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는 수익·비용의 기간배분, 명확한 구분, 총액기재원칙 및 단계별 구분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II.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 제14조제1항)

1. 매사업연도별 소득계산금액 및 계산방법

① 매연도 익금총액 > 손금총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임

각 사업연도별로 소득은 그 연도의 익금총액이 그 연도의 손금총액을 공제하고 난 잔액이 양수(+)인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이라고 하며, 음수(-)인 경우는 결손금이라고 한다.

세무상으로는 각 익금항목의 총합계, 손금항목의 총합계라고 표현하지만, 기업회계상의 손익계산내용에 익금조정항목이나 손금조정항목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익금총액 < 손금총액인 경우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하며 이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향후 10년간의 소득과 상쇄되어 공제된다.

② 기업회계상 이익개념의 존중

본 조가 각 사업연도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세법상의 소득도 이론상으로는 기업회계상의 이익과 근접한 개념인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듯이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을 위한 이익개념, 과세소득의 확정방법론,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구조 소득계산과 관련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와 조정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모두 본 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앞 부분에서 해설하였다.

2.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구조

① 이론상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boxed{\text{각 사업연도의 소득}} = \boxed{\text{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의 총액}} - \boxed{\text{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의 총액}}$$

III. 각사업연도의 결손금 (법 제14조제2항)

1. 결손금의 의의 및 계산

① 세법상 결손금의 범위 및 계산

결손금은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그 초과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boxed{\text{결손금}} = \boxed{\text{손금 총액}} - \boxed{\text{익금 총액}}$$

이러한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과세표준계산상 발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될 비과세소득이나 소득공제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초과하여 부수(⊖)가 나왔을 때 동 금액을 결손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무상 결손금은 과세표준계산의 바로 직전 단계인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단계에서 익금의 총액을 초과한 손금의 금액을 말하는데 계산구조상 이는 ⊖로 표시되는 금액이다. 일단 ⊖로 표시되면 당연도 비과세소득이나 소득공제는 대응되지 않고 그냥 소멸된다.

2. 이월결손금의 의의 및 유형

①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의의

법인의 총익금과 총손금을 차감하여 그 사업연도마다 소득계산상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된다. 이러한 각 연도마다의 결손금이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한다. 이월결손금의 내용 및 공제적용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본 법 제13조의 해설을 참조한다. 법의 조문 규정마다 공제하는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 세법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범위계산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